

출입통제장소(죽도방파제·마량 동백정 등) 재공고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방지하여 연안안전관리 및 대국민홍보

공 고 문

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주변에 해상고립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.

1. 대 상

가.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포구 갯바위

※ 상세 장소 :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

2. 출입통제 지정일 : 2018. 5. 28.

3. 출입통제 기 간 : 연 중

4. 참고사항 :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2018. 5. 1.

보령해양경찰서



출입통제장소 구역도

가.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마량포구 갯바위

- 범 위 : ————— 선 이내 지역

- 기 간 : 연 중

